

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추가로 지정

- 기존 3개에서 4개로 검사기관 확대... 연말 병목현상 해소 등 원활한 업무 기대

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(원장 박연재)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업무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기존 3개로 운영되던 검사기관*에 12월 5일자로 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’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.

* (추가)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, (기존)한국환경공단, 한국산업시험기술원, FITI시험연구원

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‘폐기물관리법’에 따라 1년마다 관련 시설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. 그러나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 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되어, 검사기관의 업무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*이 있었다.

* (2025년 기준) 1~9월 일평균 1.2개소 검사를 진행하였으나, 잔여 검사 대상 시설은 10~12월 일평균 2.6개소로 예상되어 타 기간 대비 79% 증가 추세

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연말에 집중되는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 업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‘폐기물관리법’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제41조의4에 따라, 이번에 기술인력 및 시설·장비 등을 갖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.

이번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와 기존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.

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‘폐기물관리법’에 따라 지정된 7개 분야*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의 적절성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* 소각, 소각열회수, 매립, 음식물류폐기물, 멸균·분쇄, 시멘트소성로, 열분해

전대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“이번에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간이 최대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검사의 적시성 및 적절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용어 설명.
 2.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절차.
 3.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현황. 끝.

담당 부서	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	책임자	과 장 이지미 (032-560-7520)
		담당자	연구관 김영란 (032-560-7533)
			연구사 손준익 (032-560-7531)



- 설치검사 :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수행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행
- 정기검사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른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
 - 1. 소각시설,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: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),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(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부터 3년이 되는 날
 - 2. 매립시설 :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,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
 - 3. 멸균분쇄시설 :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,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
 - 4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: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,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. 다만, 영 별표 3 제3호다목1)가)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.

- 가.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: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,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. 다만,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.
- 나.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(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(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)부터 2년이 되는 날,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
- 5. 시멘트 소성로: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),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

붙임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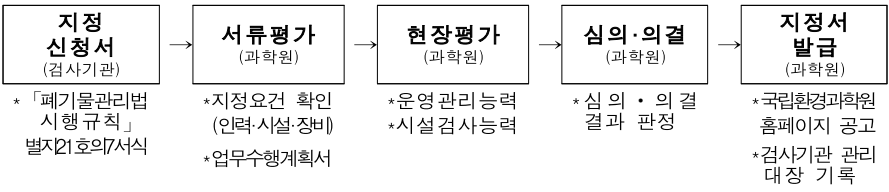
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절차

1. 법적근거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의2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의4
- 「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90호)
- 「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-18호)

2. 주요 내용

○ (평가절차)



- (평가내용) 운영관리 및 시설검사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
 - 운영관리능력(예규 별지 제3호서식) 및 시설검사능력(예규 별지 제5의1~8호)에 따름

분야	세부평가항목
서류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」 제7조 ·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의4 및 별표10의2서식
현장평가	<p>운영관리 능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내부 위원 3인, 신청서 제출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· 지정요건(기술인력, 장비, 시설) 준수 여부 ·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수행계획서(업무 절차, 자료보관 등) · 검사 장비 사용 숙련도 · 검사 분야 및 방법의 이해도(시설 공정, 검사방법 원리 등) 등
	<p>시설검사 능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내·외부 위원 3인, 현장에서 검사하는 행위에 대해 평가 · 폐기물처리시설 처분 또는 재활용시설 기준 준수 여부의 검사 방법 평가 · 공정시설의 설계사양의 적합성 및 구조의 적절성 확인 · 압력측정계 및 출구온도계 등 시설에 설치된 장치들의 적절한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검사

붙임 3

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현황(2025년 12월)

NO.	대상기관	대상분야
1	한국환경공단	소각시설, 매립시설, 멸균분쇄시설,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, 시멘트소성로, 소각열회수시설
2	한국산업기술시험원	소각시설, 매립시설, 멸균분쇄시설,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, 시멘트소성로, 소각열회수시설, 열분해시설
3	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(신규 지정)	매립시설,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
4	한국건설기술연구원	매립시설
5	한국농어촌공사	매립시설
6	한국기계연구원	소각시설, 소각열회수시설, 열분해시설
7	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	소각시설
8	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	소각시설
9	FITI 시험연구원	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